

# 행정자치부 주의요구

제 목 인사위원회의 승진임용 사전심의 부적정

기 관 명 경기도

관 계 기 관 안성시

내 용

「지방공무원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등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승진 임용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sup>4)</sup>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5조의5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공무원법」 제38조, 제39조 및 이 영 제30조, 제38조, 제38조의3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또는 의결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성시에서는 2013. 1. 16. 7급 승진대상자 사전심의를 위해 인사위원회(위원장 부시장)를 개최하였는데,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지방행정 7급 승진대상자인 지방행정8급 중 상시학습을 이수하지 못한 “○○면 ○○○, ○○○과 ○○○, ○○○면 ○○○”를 제외한 “○○과 ○○○, ○○○○○과 ○○○, ○○○동 ○○○, ○○○동 ○○○, ○○○과 ○○○, ○○○○○○○○ ○○○, ○○○과 ○○○, ○○○○○과 ○○○, ○○○○○○○○ ○○○, ○○○○○○ ○○○, ○○○○

4) ‘승진임용의 사전심의’란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 배수 범위내 심사대상자 중 결원의 수만큼 승진대상자를 심사·의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법제처 13-0093, 2013. 4. 26.)

○○○과 ○○○, ○○과 ○○○” 중 4명을 승진대상자로 사전심사한다고 의결하였고, 임용권자인 안성시장은 이들 13명 중 4명을 최종 승진임용하는 등 인사위원회의 승진임용 사전심사를 부적정하게 운영하여 왔다.

이와 같이 안성시에서 인사위원회의 승진임용 사전심사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결과,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인사위원회에서 2~4배수로 추천한 승진후보자 중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후순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이 임용권자의 결정에 따라 최종 승진임용자로 선정되었다.

### **조치할 사항            안성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승진임용 사전심의를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사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